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12511
----------	-------

제안연월일 : 2011. 6. 30.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6. 24)는 제2차 소위원회(2011. 6. 16) 및 제3차 소위원회(2011. 6. 20)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11. 6. 24)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다. 동 법률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음.

2. 제안이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재외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

회의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정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며,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외선거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권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 관련 규정의 개선

-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현재 후보자등록이 끝나기 전에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변경된 후보자등록 기간에 맞추어 선거벽보 제출기한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함(안 제 49조제1항 등).

- 2) 영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관 등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이 겹치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하도록 함(안 제218조제1항 및 제9항).
- 3) 공관의 장 외에 총영사를 두고 있는 공관은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8조제3항, 안 제218조의2).
- 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와 관련한 서류 등의 송부를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7제3항 신설).
- 5)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안 제218조의9제1항 및 안 제218조의11제5항 신설).
- 6)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관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함(안 제218조의10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7)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에 있는 방송시설로 확대함(안 제218조의14제1항).
- 8)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7항).
- 9)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218조의25제5항 신설).
- 10)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8조의19제1항).
- 11)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외선거 사무처리 절차를 마련함(안 제218조의24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안 제218조의29 신설).

나. 현행 선거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1)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관계자와 신분보유기간이 짧은 연설원 등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3항).
- 2)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
- 4)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안 제49조제7항).
- 5)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횟수 제한을 폐지함(안 제60조의3제1항).
- 6)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1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3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③ “선거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4장의 2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218조의13”을 “제218조의13”으로 한다.

제37조(명부작성)

제4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1項의 異議申請期間滿了日”을 “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로,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選舉人名簿確定日前日”을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로, “選舉權者가 選舉人名簿”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로, “당해 選舉權者”를 “해당 선거권자”로, “住民登錄票謄本”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選舉人名簿登載申請”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으로 한다.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제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제4항제4호 전단 중 “출가”를 “혼인”으로 한다.

제49조제7항 중 “候補者登録申請書”를 “후보자등록신청서”로, “公休日”을 “공휴일”로, “5시”를 “6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候補者”를 각각 “후보자”로, “政黨은 選舉期間開始日전”을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으로,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을 “당원의 전과기록을”로, “당해”를 “그 요청을 받은”으로, “回報하여야”를 “회보(回報)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回報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録시”를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로,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録마감후”를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로, “당해 選舉區”를 “해당 선거구”로, “候補者”를 “후보자”로, “回報하여야”를 “회보하여야”로 한다.

제5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選舉運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舉日前日까지에 한하여 이를”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로 한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郷土豫備軍 小隊長級”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소대장급”으로, “統·里·班의 長이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을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으로,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投票參觀人이나 不在者投票參觀人”을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選舉日前 90日(선거일”을 “선거일 전 90일(선거일”로, “그 職”을 “그 직”으로, “選舉日後”를 “선거일 후”로, “選舉日까지)에는 종전의 職에 復職될”을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時期”를 “시기”로 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제7항 중 “후보자등록기간 중”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제60조의3제1항제4호 전단 중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를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大統領選舉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2日(大統領選舉”를 “2일(대통령선거”로, “3日)”을 “3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地域(投票區를 單位”를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되”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로, “地域을 申告”를 “지역을 신고”로,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그 地域”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으로 한다.

제65조제5항제2호가목의 “3일”을 “7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5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6일”을 “10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53조에 따라”로 한다.

제65조제7항제1호의 “출가”를 “혼인”으로 한다.

제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法에서 “地域放送施設”이라 함은 당해 市·道の 管轄區域 안에 있는 放送施設(道の 경우 당해 道の 區域을 放送圈域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

시”를 “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말하며, 당해”를 “말하며, 해당”으로 한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選舉의”를 “선거의”로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各目”을 “각 목”으로, “事業說明會, 公廳會, 職能團體모임, 體育大會, 敬老行事, 民願相談”을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으로, “後援”을 “후원”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4호라목 본문 중 “職業輔導教育 또는 有償으로 실시하는 敎養講座를 개최·後援”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으로 한다.

제122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후보자등록기간 중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으로, “會計責任者(이하 이 條에서 “選舉事務長등”)을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으로, “手當과 實費”를 “수당과 실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15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世帶別로 選舉人の 姓名·選舉人名簿登載番號·投票所의 위치·投票할 수 있는 時間·投票”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로, “기타 投票參與를 勸誘”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로, “管轄區域안의 每世帶”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이 경우 제65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제169조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1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候補者別”을 “후보자별”로, “政黨別”을 “정당별”로, “公表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를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閲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을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으로, “權限”을 “권한”으로, “開票錄”을 “개표록”으로 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5조제5항 단서 중 “署名·捺印을 거부하는 委員”을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으로, “權限”을 “권한”으로, “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을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으로 한다.

제1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再選舉”를 “제1항의 재선거”로, “判決 또는 決定”을 “판결 또는 결정”으로,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規定에”를 “제44조제1항에도”로, “選舉에 사용된 選舉人名簿”를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로 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20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제2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다”를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8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거나 정당의 당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제218조제8항 중 “관할 구역으로 하며”를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로, “표시한다”를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2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두되, 해당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8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8제1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218조의8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9제1항 중 “장은”을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제218조의10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11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

제218조의13제2항 후단 중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

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8조의14제1항제2호 중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을 “재외선거인등”으로 한다.

제218조의16제1항 중 “투표는”을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로, “재외투표소에 가서”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제218조의16제2항 중 “6시”를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218조의17제7항 전단 중 “제167조”를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거일에”는 “재외투표기간에 또는 재

외투표소 안에서”를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한다.

제218조의18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기계장치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9제1항 중 “신분증명서(여권에 한한다. 다만, 파병군인의 경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

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218조의13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투표용지 교부, 투표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0제4항 중 “4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중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를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한 후”로 한다.

제218조의21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6시”를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일”은 “선거일 전 3일”로,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는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로 본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표”를 “재외투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로 적은 것[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併記)]

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

제218조의25제2항 중 “것(정당의)”를 “재외투표(정당의)”로,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제218조의25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표”를 “재외투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외선거인”을 각각 “재외선거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를 준용한다.

제218조의26의 제목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18조의29 및 제218조의30을 각각 제218조의30 및 제218조의31로 하고, 제218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2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7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은 書面”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各號”를 “각 호”로, “記名·捺印하여야”를 “기명하고 날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訴請狀에는 當事者數에 해당하는 副本”을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제219조(선거소청)

제2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者は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를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4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를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투표안내문”을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으로, “職務”를 “직무”로,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사람 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를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시·군의 장의 기술적 조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1條(候補者 등의 身分保障) ①</p> <p>· ② (생 략)</p> <p>③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選舉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投票參觀人, 不在者投票參觀인과 開票參觀人은 당해 身分을 취득한 때부터 開票終了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였거나 이 法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9條(選舉犯罪煽動罪)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p>	<p>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p>
<p>第33條(選舉期間) ①·② (생 략)</p> <p>③ “選舉期間”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p>	<p>제33조(선거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선거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舉日까지를 말한다.

第35條(補闕選舉 등의 選舉日) ①
(생략)

②補闕選舉·再選舉·增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併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생략)
2.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併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 이내에 실시하되, 選舉日은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協議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현행과 같음)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第43條(名簿漏落者の 구제) ①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1項의 異議申請期間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選舉人名簿確定日前日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正當한 選舉權者가 選舉人名簿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當해 選舉權者 또는 구·시·군의 장은 住民登錄票謄本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選舉人名簿登載申請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 選舉人名簿는 選舉日전 7日에, 不在者申告人名簿는 不在者申告期間滿了日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當해 選舉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
-----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 해당 선거권자 -----
주민등록표등본 -----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

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은 候補者登錄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第48條(選舉權者의 候補者推薦)

① ~ ③ (생략)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생 략)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舉에 있어서 是 選舉日전 24일,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 是 選舉日전 15일(이하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 이라 한다)부터 2日間(이하 “候補者登錄期間” 이라 한다)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②政黨推薦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舉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是 그 推薦政黨이, 地域區國會議員選舉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是 政黨推薦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申請하되, 推薦政黨의 代表者가 署名·捺印한 推薦書와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 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是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是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

本人承諾書(大統領選舉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 候補者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登錄은 推薦政黨이 그 順位를 정한 候補者名簿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48條(選舉權者의 候補者推薦)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權者가 記名·捺印(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推薦狀(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출가한

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
-----혼인-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6. (생략)

⑤·⑥ (생략)

⑦ 候補者登錄申請書의 접수는 公休日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⑨ (생략)

⑩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政黨은 選舉期間開始日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소속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

5.·6.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후보자등록신청서-----
공휴일-----
 ----- 6시-----.

⑧·⑨ (현행과 같음)

⑩ 후보자-----
 ---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 후보자--
 ----- 당원의 전과
기록을 -----
 ----- 그 요청을
받은 -----

며,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回報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錄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選舉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候補者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⑪ ~ ⑮ (생략)

第59條(選舉運動期間) 選舉運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舉日前日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第60條(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者) ① (생략)
② 郷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의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해당 선거구 후보자 회보하여야 한다.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統·里·班의 長이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投票參觀人이나 不在者投票參觀人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選舉日 전 90日(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하며, 選舉日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舉日까지)에는 종전의 職에 復職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時期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⑥ (생략)
 ⑦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
 -----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

 ----- 그 직-----
 ----- 선거일 후 -----
 -----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
 ----- . -----
 ----- 시기-----
 -----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선거기간개시일 전 일까지 -----
 ----- .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 7. (생략)

② ~ ⑥ (생략)

제64조(선거벽보)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録마감일후 3日(大統領選舉에 있어 追加登録의 경우에는 追加登録마감일후 2日 이내를 말한다)까지 轄부할 地域을 管轄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日(大統領選舉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日)까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선거는 候補者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候補者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轄부할 地域을 管轄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해당 區·市·郡선거관리위원회

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投票區를 單位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되,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을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그 地域을 지정한다.

③ ~ ⑪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생략)

⑤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

회-----

----- 2일(대통령선거-
----- 3일)

----- 지역(투표구를 단위

-----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 지역을 신고

-----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현행과 같음)
2. -----

가. -----

일 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 (생략)

⑦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

----- 7일-----

----- 해당 -----
----- 제15
4조에 따라 -----

-----.

나. -----

----- 10일-----

----- 해당 -----
----- 제15
3조에 따라 -----

-----.

⑥ (현행과 같음)

⑦ -----

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 5. (생략)

⑧ ~ ⑫ (생략)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 ① (생략)

② 이 법에서 “地域放送施設”이라 함은 당해 市·道の 管轄區域 안에 있는 放送施設(도의 경우 당해 道の 區域을 放送圈

1. -----

 -----혼인-----

2. ~ 5.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해당 市·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道の 區域을 방송권

域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도로써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

③ ~ ⑬ (생략)

第86條(公務員 등의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다음 各目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事業說明會, 公廳會, 職能團體모임, 體育大

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

---- 말하며, 해당 -----

----- 선거의

會, 敬老行事, 民願相談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後援
하는 행위

가. ~다. (생략)

라. 職業輔導教育 또는 有償으
로 실시하는 教養講座를 개
최·後援하는 행위 또는 주
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
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
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
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
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바. (생략)

5. (생략)

③ ~ ⑦ (생략)

第122條의2(選舉費用의 補填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
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 후원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職業지원교육 또는 유상
(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를 개최·후원-----

마. 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후보자등록기간 중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6. ~ 11. (생략)

③·④ (생략)

第135條(選舉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①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會計責任者(이하 이 條에서 “選舉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手當과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政黨의 有給事務職員, 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또는 地方議會議員이 選舉事務長 등을 겸한 때에는 實費만을 보상할 수 있다.

5. 이 법-----

6. ~ 11.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 수당과 실비----- .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② ~ ⑤ (생략)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 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世帶別로 選舉人의 姓名·選舉
人名簿登載番號·投票所의 위
치·投票할 수 있는 時間·投票
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投票參與를 勸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
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
까지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발
송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

次) ① 選舉人은 자신이 投票所
에 가서 投票參觀人의 參觀하에
住民登錄證(住民登錄證이 없는
경우에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
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寫眞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旅券·運轉免許證·公務
員證 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規則이 정하는 身分證明書を 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 선거
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
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

관할구역안의 매세
대----- . 이 경
우 제65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
은 세대에는 접자형 투표안내문
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
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
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

한다. 이하 “身分證明書” 라 한다)을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選舉人名簿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第178條(開票의 진행) ① (생략)

② 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前에 得票數를 檢閲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이하 “신분증명서” 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보자별 ----- 정당별 -----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全員은 공표前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 -----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 권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④ (생략)

第185條(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의 작성 등) ① ~ ④ (생략)

⑤ 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에는 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署名·捺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생략)

<신 설>

----- 개표록-----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全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

권한-----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

-----.

⑥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97條(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 ① (생략)

②第1項의 再選舉를 실시함에 있어서 判決 또는 決定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초 選舉에 사용된 選舉人名簿를 사용한다.

③ ~ ⑨ (생략)

第204條(選舉人名簿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選舉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는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規定에 불구하고 하나의 選舉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의한다.

②·③ (생략)

第211條(投票用紙·投票案内文 등에 관한 特例) ① ~ ③ (생략)

④同時選舉에 있어서 投票案内文은 第153條(投票案内文의 발송)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投票案内文으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재선거-----
----- 판결 또는 결정-----
----- 제44조제1항에도 -----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

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第216條(4개 이상 選舉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 ① (생략)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기간은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제4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등록기간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4. 선거운동은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표 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5. 제49조 및 이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다.

<삭 제>

6. 선거벽보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7.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선거공보는 제65조제5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같은 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제출하

<삭 제>

여야 한다.

8. 제1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9.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

<삭 제>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

----- 포함
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
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
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
관은 제외한다-----

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거나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④ ~ ⑦ (생략)

⑧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영사관할 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⑨ (생략)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되, 해당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신 설>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①·② (생략)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 -----

----- 둔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판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

---.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 ③ (생략)

⑤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 -----

---.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① ~ ④ (생략)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생략)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
 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
 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
 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함께 보내
 야 한다.

<신 설>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
 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
 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
 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
 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
 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
 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
 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
 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신 설>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 6. (생략)
- ②·③ (생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

3. ~ 6.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 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 ⑦ (생략)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 재외선거인등-----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
----- .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 (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
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③ (생략)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 운영) ① ~ ⑥ (생략)

⑦ 제163조·제166조·제166조
의2 및 제167조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
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
원회”로, “투표소”는 “재
외투표소”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기간에 또는 재외투
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
부) ①·② (생략)

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
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 6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
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
다)-----
-----.

③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
-----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

- “투표관리관”은 “재외투
표소의 책임위원”으로, “선
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
서”-----.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
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기계장치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신 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

----- 신분증명서

권에 한한다. 다만, 파병군인의 경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 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封緘)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218조의13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신 설>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
참관)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
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
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4명
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
관인으로 선정한다.

⑤ (생략)

<신 설>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생략)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투표용지 교
부, 투표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
참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2명

-----.

⑤ (현행과 같음)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원
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
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
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
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
게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생략)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신설>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일”은 “선거일 전 3일”로,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는 “개표일에는 개표소

<신 설>

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 5. (생략)

<신 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정당

에서” 로 본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 -----

재외투표-----.

-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로 적은 것[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併記)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

② -----
----- 재외투표(정당

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은 무효로 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신 설>

제218조의26(국외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생략)

<신 설>

의 -----
----- 포함한다)는 -----
-----.

③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④ -----
----- 재외투표-----
-----.

1. ~ 3. (현행과 같음)

4. 재외선거인등-----

----- 재외선거인등-----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를 준용한다.

제218조의26(국외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신 설>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7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9 (생략)

제218조의30 (현행 제218조의29와 같음)

제218조의30 (생략)

제218조의31 (현행 제218조의30와 같음)

第219條(選舉訴請) ① ~ ④ (생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
- 각 호----- 기

후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訴請狀에는 當事者數에 해당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⑥・⑦ (생략)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 ① (생략)

② 第1項의 決定은 다음 각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決定에 참여한 委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③・④ (생략)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1. (생략)
- 2. 選舉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學校 기타 公共機關・社會團體・宗教團體・勞動團體 또는 青年團體・婦女團體・老

명하고 날인하여야 -----. -----
--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분-----.

- 1. ~ 5. (현행과 같음)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선거운동에 이용할 目的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여성단체・

人團體 · 在鄉軍人團體 · 氏族團體 기타의 機關 · 團體 · 施設에 金錢 · 物品 등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3. ~ 5. (생략)

② ~ ⑧ (생략)

第24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罪) ① · ② (생략)

③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 · 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제64조의 선거벽보 ·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 · 첩부 · 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1條(投票의 秘密侵害罪)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노인단체 · 재향군인단체 · 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

-----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 직무-----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의 秘密을 침해하거나 選舉日의 投票마감 시각 종료 이전에 選舉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政黨이나 候補者 또는 投票한 政黨이나 候補者の 표시를 요구한 者와 投票結果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質問하거나 投票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結果를 公表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242條(投票·開票의 간섭 및 妨害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投票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妨害罪)

① -----

-----.

1. -----

-----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47條(詐僞登載·虛僞捺印罪)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詐僞의 방법으로 選舉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者,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選舉區에서 投票할 目的으로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전 180일부터 選舉人名簿作成滿了日까지 住民登錄에 관한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날인 또는 捺印을 한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者は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274條(選舉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施行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選舉期間중 各級行政機關과 各級選舉管理委員會에 대하여 행하는 申告·申請·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休日에 불구하고 一般職國家公務員의 平日의 正規勤務時間중에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